

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07-416호(2007.11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5-335호(2015.12.24.), 제2016-217호(2016.09.01.), 제2020-288호(2020.07.16.), 제2022-301호(2022.08.11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17-154호(2017.05.18.), 제2020-383호(2020.09.29.), 제2023-109호(2023.03.16.), 제2024-328호(2024.07.25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고시된 덕소6A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7. 24.

남 양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가. 종 류 : 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가.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-8(덕소리 513번지) 일원
나. 면 적 : 12,098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가. 명 칭 :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3-6(현진빌딩 2층)
다. 대 표 자 :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희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7. 5. 17. (최초)
6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)(변경 없음)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(변경 없음)
8. 건축물의 대지면적 · 건폐율 · 용적율 · 높이 ·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율(%)	높이(m)	용도	세대수	비고
주택재개발 정비사업	기준) 8,060	기준) 39.69	기준) 274.93	75.00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212세대	지하2층~지상26층
	변경) 7,946.2	변경) 35.36	변경) 277.79				
	감) 113.8	감) 4.33	증) 2.86				

9. 관계도서 열람방법
가. 관계도서(지형도면 포함)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(T:031-590- 4417) 및 덕소6A구역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T:031-521-137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.
나. 지형도면 : 게재생략. 끝.